

## 제12차 사법행정자문회의 결과요지

2021. 3. 11.

사법행정자문회의 운영지원단

## <안건에 대한 자문의견 관련 결정사항 등>

- 1. 2022년도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신규사업 및 우선순위 선정(재 정·시설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)
  - 2022년도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신규사업 및 우선순위를, 신축사업의 경우 ① 춘천지법 ② 성남지원 ③ 충주지원 ④ 의성지원, 증축사업의 경우 ① 부산동부지원 ② 밀양지원의 순서로 정함이 타당함
- 2. 영상재판 확대 여부 및 방안(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)
  - 현행 제도에서의 영상재판 활성화 방안
    - 필요한 상황에서 영상재판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, 지속적인 홍보 및 정보 공유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함과 아울러, 장비 확충 및 프로그램 편의성 증진 을 통해 사전준비를 위한 재판부 및 당사자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여야 함
    - 영상재판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재판부의 적극적인 활용 의지가 중요함

## ■ 영상재판 허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

-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통한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민사사건 변론기일에 대하여도 영상재판을 도입하되,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 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·단계적으로 허용범위를 확대함이 적절함
- 민사사건 변론준비기일은 쟁점과 증거의 정리, 그 밖에 효율적이고 신속한 변론진행을 위한 준비라는 절차의 특성에 맞춰 허용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



- 법관 대면권의 의의, 전자소송 미도입 상황에 비추어 형사사건에서 영상재판을 확대하는 데 신중하여야 하나, 피의자·피고인의 호송이나 증인 소환이 곤란한 예외적인 상황을 대비한 영상재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음
- 3.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 방안(상고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소관 안건)
  -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하여, 토론회 또는 공청회, 추가 인식조사, 유관기관 의견조회 등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함. 다만, 이른바 공론화 방식의 의견수렴은 그 역할과 기능, 효율성, 감염병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는 실시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

## 4. 평정 실질화 방안(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)

- 평정 실질화 방안은 5급 이하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
- 평정자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확인자의 종합평정점 부여 권한은 폐지하되지 확인자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, 평정자는 업무유관자 및 소속 공무원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평정하며, 연 2회 이상 평정자교육을 실시하도록 함
- 근무성적평정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함)의 실질화를 위하여 위원회에 평정단위별서열명부 작성권한을 부여하고, 사무국을 둔 지원에는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독립된 위원회를 설치하되, 그 외 지원은 본원의 위원회에 사무과장 등 1인 이상을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함. 다만, 6급 이하 직원은 위원회에 참여하지 아니함
- 평정항목 및 구성비율은 【근무실적(40), 직무수행능력(30), 직무수행태도 (30)】로 하고, 각 평정항목별 평정요소에 대하여 분과위 단일의견인 개 선안을 채택함



- 평정등급 및 비율은 가(20%), 나(30%), 다(30%), 라(10%), 마(10%)의 5단 계로 하고, 최저등급인 '마'등급은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, 동일 평정등급 내 평정점은 1.0 정도의 편차로 세분화함
- 투명하고 공정한 평정을 위하여 평정결과의 공개 및 이의제도를 도입하여 평정자가 확인자와 협의하여 부여한 순위와 평정점을 공개하고, 이의신청 시 개선된 양식에 따른 평정자종합의견을 공개하도록 하며, 평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확인자에게 하고, 그 결과에 대한 불복신청은 위원회에 하되,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음
-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요소 중 훈련성적평정은 폐지하고 승진의 요건으로 서 교육이수제를 도입하되,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 반영비율에 관하여 는 2021년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는 근무성적평정 60 : 경력평정 40으로 하고, 그 후의 근무성적평정 반영비율 상향은 추후 결정하기로 함.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반영되는 근무성적평정기간이 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이 되도록 함
- 5. 재택근무 실질화를 위한 의안 관련 검토(업무용 가상 PC 배정을 중심으로)(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제안 안건)
  -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이 장기화되고 향후 주기적으로 반복될 우려 가 있으므로, 이에 대비하여 재택근무를 실질화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
  - 이를 위하여 우선 집중 육아기 법관에 대한 업무용 가상PC의 배정 요건 및 사용시간 제한을 완화하여 시범운영하고, 위 시범실시 결과를 토대로 보안에 대한 기술적 대책 등을 강구함이 바람직함